

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

[시행 2023.09.27]
(제정) 2023.09.27 조례 제208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감염병관리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5186-4117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조(예방접종 종류)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상포진(1회)
2. 인플루엔자(매년 1회)

제4조(지원대상)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대상포진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의 장애인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2. 인플루엔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단,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)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제5조(예방접종 실시기관) ① 예방접종은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절차)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
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
 3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
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
-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.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. 다만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
2.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

제8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)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.

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대장 등 관리)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,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질병관리청의 「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」을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